

# 헌재 유류분 결정, 상속과 기업승계 어떻게 달라지나



### 제1주제 발표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의 및 전망

- 강인철 변호사(법무법인 린)

토론 오종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진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식 변호사 (법무법인 린)

### 제2주제 발표

상속분야의 변화와 전망

- 최지수 변호사(법무법인 린)

토론 김수정 교수(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원종훈 본부장(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박수연 기자 (법률신문)

## 제 1 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

발행일	2024년 5월 22일
발행인	이수형
발행처	(주)법률신문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대표전화	02-3472-0602~5
팩스	02-3472-0606
홈페이지	<a href="http://www.lawtimes.co.kr">www.lawtimes.co.kr</a>

제 1 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HERE LAW & HEAR LAW

---

# 현재 유류분 결정, 상속과 기업승계 어떻게 달라지나



**제 1 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HERE LAW & HEAR LAW**

1. 법률신문 기사

현재,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은 위헌”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 입법부작위 등은 ‘헌법불합치’	4
新유류분 조항 개정 예고에 상속인들 촉각	7

2. 제1주제 발표

<b>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의 및 전망 - 강인철 변호사 (법무법인 린)</b>	10
--	----

토론

오종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
김현진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4
김종식 변호사 (법무법인 린)	

3. 제2주제 발표

<b>상속분야의 변화와 전망 - 최지수 변호사(법무법인 린)</b>	38
---------------------------------------	----

토론

김수정 교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68
원종훈 본부장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71
박수연 기자 (법률신문)	76

# 현재, “형제·자매에 무조건 상속하는 유류분 조항은 위헌”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 입법부작위 등은 ‘헌법불합치’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2024-04-25 16:25

## 유류분 조항별 구분

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제4호)	위헌 (전원일치)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제1호~제3호)	헌법불합치 (전원일치)
민법 제1119조	기여분에 관한 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헌법불합치 (전원일치)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25일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1116조, 제1118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등(2020헌가4 등)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제1118조)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못박았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다만 현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이 동일한 것을 포함해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이 획일적인 부분,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부분 등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현재는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아울러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이에 따라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 부분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헌재는 이날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등 총 40여 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앞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2010년과 2013년 총 세 번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민법상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유류분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유류분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하면서도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하여 위헌·헌법불합치율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新유류분 조항 개정 예고에 상속인들 촉각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2024-04-28 07:06

## 패륜 권리상실-기여 인정 등 법원 쟁점별 판단 부담 늘어 '증여재산 가액 산정 시점' 등 상속분쟁의 변수로 남아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유류분 관련 입법 보완을 주문한 2025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유류분 소송 당사자들의 법적 다툼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 민법에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 청구를 보수적으로 판단했던 법원도 현재 결정 및 개정 법률에 따라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개정법률 따라 유류분 다툼 첨예해질 것”

현재가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성을 지적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무효가 됐다. 나머지 △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유류분 상실 규정이 미비한 점(제1112조 1~3호)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가족에게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유류분 조항별 위헌성 판단 결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민법 제1112조 제4호)	고인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민법 제1118조)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과 상식에 반한다”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불합리한 상황 발생”
전원일치	전원일치	전원일치
즉시 효력 정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 필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 필요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상속사건 등 사실심 재판부의 재량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어느 정도 심리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법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이번 헌재 결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산을 공평·타당하게 분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와 자료를 직접 검토할 수 있는 법원의 보다 큰 재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51·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기여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 결국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류분은 이미 기여도가 반영된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건에서 기여분 청구에 대한 주장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도록 놔두는 현행법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가

족제도의 단절을 막고 상속인들 간 긴밀한 연대를 위해 유류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상 변화에 따른 입법 보완을 요구한 것이다.

유류분 도입 당시 극심했던 장자상속 폐해보다 최근 '패륜 상속'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등 가족 환경 변화가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 개편을 이끌어낸 셈이다.

### 반대의견 등 입법화도 주목

이번에는 합헌 결정이 났지만 향후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쟁점도 있어 상속 분쟁의 '변수'로 남았다.

다른 가족들이 받을 유류분에 영향을 끼치는 증여의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들(제1114조 후문 및 제1118조)이 대표적이다.

다수의견(이종석·이은애·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거래의 안전보다 유류분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나머지 재판관 4명(이영진·김기영·문형배·김형두 재판관)이 반대(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며 팽팽히 맞섰다.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물가상승률,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 증여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특히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은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기업승계를 위해 기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면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할 수 있다”며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조웅규(42·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생전 증여 부분에 관심이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번 현재 결정이 입법을 형성했다고 보기는 미약하지만 반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향적인 입법이 고려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특히 기업승계 목적이나 공익목적의 증여의 경우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재판관 2명의 별개·보충의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1 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HERE LAW & HEAR LAW

< 제 1 주제 >

헌법재판소  
유류분 위헌 결정의 의의 및 전망



---

발표자

**강인철** 변호사 (법무법인 린)

---

토론포널

**오종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진**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식** 변호사 (법무법인 린)

# 鹿米 比舜

## CONTENTS

01.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02.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03. 결정의 의의 및 향후 전망

鹿米 법무법인 린  
比舜

강인철 변호사

www.law-l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3층 (325/326/327호)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Tel: 02-3477-8695 Fax: 02-3477-8694 E-mail: lin@law-lin.com

# 01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 1. 2023. 5. 17. 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변론

- ◆ 법무법인 린은 2023. 5. 17.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유류분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에 참석하여서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관하여 변론함
- ◆ 심판대상 조항: **민법 제1112조 ~ 제1118조**

MEMO

## 2. 공개변론 내용

### ◆ 다음과 같은 기본권의 침해 부분 역설

- 피상속인의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
-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 수증자의 재산권

### ◆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강조

- ◆ 유류분청구권자의 범위와 비율에 관한 **민법 제1112조**는 ①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자로 규정하고 있고, ② 유류분 상실제도와 같은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③ 부양의 필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함
- ◆ 유류분제도는 **불효자양성법**인 동시에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역설함

MEMO

# 02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4. 4. 25.)

-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 위헌 결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 ◆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 ~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고 202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MEMO

## 2. 위헌 결정의 논거

### ◆ 민법 제1112조 제4호 단순 위헌 결정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할 타당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 피상속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 침해

### ◆ 민법 제1112조 제4호 단순 위헌 결정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할 타당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 피상속인, 수증자 및 수유자의 재산권 침해

### ◆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그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되어 증여재산을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03

## 결정의 의의 및 향후 전망

### 1. 결정의 의의

- ◆ 유류분 제도 일부 조항들에 대한 최초의 위헌 판단
- ◆ 가족관계의 변화 등 시대상의 변화 반영
- ◆ ‘불효자양성법’에 대한 강력한 제동
- ◆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및 유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 형성의 계기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없는 피상속인의 경우 유언의 자유의 100% 보장
- ◆ 유언제도의 활성화 기대

MEMO

## 2. 향후 전망

- ◆ 현재 계류중인 유류분 소송들에서 패륜적인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혹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개정 입법시까지 재판절차의 중단 필요성 대두
- ◆ 유류분상실사유 및 기여분에 관한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조항들이 잘 만들어지길 기대
- ◆ 개정 입법 후 유류분상실사유 및 기여분에 관한 쟁점이 추가되어서 유류분 소송의 난이도는 종전 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임

MEMO

## 유류분 위헌결정(헌재 2024.4.25. 2020헌가4)의 분석과 전망

### I. 헌재 2024.4.25. 2020헌가4 결정의 분석

#### 1. 헌재 2024.4.25. 2020헌가4 결정의 내용

##### (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헌법불합치(2025.12.31.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 ③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 헌법불합치(2025.12.31.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2) 반대의견(재판관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김형두)

- ①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4조 후문도 헌법불합치
- ②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를 모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헌법불합치

(3) 별개의견(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민법 제1112조가 위헌이라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로서 민법 제1112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부분도 포함되어 헌법에 위반됨

(4) 보충의견(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의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유류분반환시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5조 제1항도 비록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공익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 개선이 바람직함

## 2. 유류분권자의 범위와 유류분 비율

### (1) 유류분권자의 범위

- 결론: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 단순위헌
- 이유: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수유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중대하고 심각함

### (2) 유류분 비율

#### ① 다수의견(재판관 7명)

- 결론: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확일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 - 합헌
- 이유: 유류분에 관한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서 유류분권자와 각 유류분을 적정하게 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법원이 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유류분권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리의 지연 및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 ② 별개의견(재판관 2명)

- 결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민법 제1112조 - 위헌
- 이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그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그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직계비속보다 더 절실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배우자가 상속에서 직계비속보다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함

### 3. 유류분 상실제도

- 결론: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 위헌
- 이유: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 이므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는 불합리하고 부당하 여 피상속인과 수증자(수유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중대하고 심각함

### 4. 기여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결론: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 1118조 - 위헌
- 이유: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아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 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은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 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 결),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 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

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수유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중대하고 심각함.

## 5.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 (1) 다수의견

- **결론** : 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로 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해의를 가지고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 합헌  
②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 부분 - 합헌
- **이유** : 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적 목적으로 증여(기부)하거나 기업승계를 위하여 자신의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으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와 ‘가족제도의 중국적 단절의 저지’라는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에 고려하면 크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민법 제1114조 전문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한정하여 선의의 수증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③ 민법 제1114조 후문에서 당사자 사이에 유류분권자에 대하여 손해를 가할 의사(이하 ‘해의’라 한다)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증여는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유류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이다. 대법원은 해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④ 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는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의 범위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석(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 (2) 반대의견(재판관 4명)

- 결론: ①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4조 후문 - 헌법불합치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를 모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 - 헌법불합치
- 이유: ① 공동상속인 외의 제3자가 유류분권자에 대한 해의를 가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시기를 불문하고 해당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도록 하고(민법 제1114조 후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으로서 증여

MEMO

를 받은 경우에도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여 그 시기를 불문하고 해당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도록 함(민법 제1118조 중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써,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의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② 특히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③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유효하게 행한 증여도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인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고, 한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던 유류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미 해당 물건을 장기간 적법하게 보유해 온 수증자 또는 그로부터 물건을 이전받은 제3자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④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근거하여 증여받은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의무를 지거나,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고 제3자에게 적용되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반환의무를 질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참조). 굳이 민법 제1118조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⑤ 외국 입법례를 보아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상속개시 전 10년(독일·일본), 상속개시 전 5년(스위스), 상속개시 전 2년(오스트리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 (3) 보충의견(재판관 2명)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증여이기만 하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를 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정당한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입법개선촉구

## 6. 원물반환의 원칙

### (1) 다수의견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의 부족분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류분권자의 보호와 함께 상대방인 수증자(또는 수유자)와의 이해관계 및 거래의 안전을 모두 합리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원물반환이 원칙, 예외적 가액반환(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참조)

### (2) 보충의견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물반환 원칙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심화로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입법개선촉구

## II . 현재 2024.4.25. 2020헌가4 결정의 전망

### 1. 일반

#### (1) 민법, 가사소송법 등 개정

- ①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상실시키는 유류분상실제도를 규정하기 위한 민법 등 개정 (2025.12.31.까지)
- ②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민법 등 개정(2025.12.31.까지)

#### (2) 유류분 재판의 잠정적 중단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적 행위 등 유류분 상실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유류분반환의무자인 수증자 또는 수유자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등 개정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기여분을 반영하는 민법 등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 (3) 유류분 재판의 증가

2024.2.26.자 법률신문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접수 건수가 지난 10년간 3배 증가하였다(2012년 590건 - 2022년 1,872건).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유류분반환소

송에서 유류분 상실사유와 기여분에 관한 쟁점이 추가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변호사의 부담과 역할 역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유류분상실제도의 도입

현재 2024. 4. 25. 2020헌가4 결정으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2025. 12. 31. 까지 민법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상속권상실선고제도’에 관한 민법 등 개정안을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함. 또한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권이 상실된 자는 유류분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제1112조 참조),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유류분상실선고제도’로서의 기능도 갖는 것이지만, 유류분권을 넘어서 상속권까지 상실되므로, 양자의 목적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등 유류분권을 가지는 모든 유류분권자에 대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도록 한 위 헌법재

관소 위헌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권상실선고제도'를 도입한 민법 등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는 민법 등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위 '상속권상실선고제도'는 관할법원을 가정법원으로 하는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유류분 상실사유'의 존재 여부는 유류분반환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현재 유류분반환소송을 일반 민사사건으로 다루는 상태에서는 '유류분 상실사유'에 대한 판단도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도 고려하여야 하고, 기여분은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차제에 유류분반환소송도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 3. 기여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재 2024. 4. 25. 2020헌가4 결정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내용으로 2025. 12. 31. 까지 민법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민법 제1008조의2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위 결정에서 지적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기여상속인)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적용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하고, 기여상속인은 다시 기여분을 가

산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의2).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며, 피인지자 등 피상속인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반환청구(민법 제1014조)에서 기준이 된다. 즉 민법상 기여분제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그 이유에서,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므로, 기여상속인은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하여 위 증여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위 결정은 피상속인이 기여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적한 위헌적 요소는, 단순히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것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다. 기여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기여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기여한 경우도 그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제외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나 피인지자 등 피상속인 사후에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가액반환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이해당사자들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유류분의 반환은 공동상속인 이외에 제3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에 대해서도 인정

되는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기여분을 공동상속인들만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면, 수증자(수유자)인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현행법 제1008조의2 제2항과 달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기여분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만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유류분반환소송은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민사사건임에 반하여, 기여분의 결정은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유류분반환소송에서 기여분도 고려하여야 한다면, 유류분반환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기여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 기여분만큼은 유류분반환소송이 제기된 지방법원에서 결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여분 산정에서 고려되는 여러 비송적 요소들을 고려하면 적합하지 않으므로, 차제에 유류분반환소송을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4.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민법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제한하고(제1114조 1문),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1년 전에 한 증여도 포함하며(제1114조 2문),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의 제한 없이 포함한다(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 준용).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합헌이라고 하였으나, 상당수(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해의'가 있는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 시기의 제한이 없는 것(제1114조 2문)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 시기의 제한 없이(제1118조, 제1008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대의견은 그 이유로, 수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며, 수증자와 수증자로부터 양수한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유류분 반환의무를 지게 될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3자로서 (해의가 없는 한) 제1114조 1문의 "1년간" 증여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시기를 불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제1114조 2문)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해의'를 가진 수증자를 유류분권자보다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다수의견의 지적이 타당하다. 특히 '해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에 비추어 보면, 가령 10년 이상이 경과한 증여에 대해 당사자 쌍방의 '해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일 것이다.

수증자로부터 증여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반대의견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판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는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크게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1년간의 증여"로 제한되는 것(제1114조 1문)이어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만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대의견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달리 당사자 쌍방의 '해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해의'를 가진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게 되어서( 제1114조 2문)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에 대해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성질을 갖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다수의견의 지적이 타당하다. 가령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중 10년 이내의 증여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한다면, 부(父)가 장자(녀)에게 사망하기 15년 전에 재산의 1/2을 증여하고, 차자(녀)에게는 나머지 1/2 재산을 2년 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 장자(녀)는 차자(녀)에게 수증된 재산 중 1/4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 부(父)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

## 5. 원물반환의 원칙

현재 2024.4.25. 2020헌가4 결정은 유류분 반환에서 원물반환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 1115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하였으나, 소수(2명)의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원물반환의 원칙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심화로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인 형성권설에 따르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이미 이행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은 유류분권자에게 복귀하므로(물권적 효력), 수증자(수유자)는 유류분권자에게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수증자(수유자)가 여러 명이면 유류분 부족분(비율)은 각자가 얻은 수증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하고(제1115조 제2항), 증여받은 목적물이 여러 개이면 모든 목적물이 유류분 부족분(비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결과적으로 각 증여 목적물마다 극히 소수의 지분이 반환되고, 공유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공유물 분할절차를 밟게 되는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개정하여 원물반환의 원칙을 버리고 가액반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것이다. 원물반환의 원칙을 취하였던 일본민법(제1016조) 역시 2018년 이러한 개정을 거쳐 가액반환주의로 전환하였다. 다른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모든 목적물을 일률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최근에 증여된 목적물부터 순차적으로 반환하게 되면(일본민법 제1047조 참조), 반환되는 증여 목적물이 감소하고, 공유관계가 발생하는 목적물도 최소한으로 그칠 것이어서, 모든 증여 목적물에 공유관계가 발생하는 부작용은 회피될 수 있다.

## 토론문

먼저 2024년 4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하면서, 위 결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법률신문과 법무법인 린의 기획력과 추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강인철 변호사님의 “헌법재판소 유류분위헌 결정의 의의 및 전망”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위해 현재 결정문 원문을 읽어보니 무려 77페이지에 달하였습니다. 위헌법률심판제 청법원만 14곳이고, 제청신청인 18명과 헌법소원 청구인 53명, 그리고 이들을 대리한 60여 명의 변호사님을 보면서 유류분 제도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문제가 많았으며, 또 우리 시대가 제도의 개정을 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학술대회에서, 또 논문을 통해 프랑스의 유류분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의 것과 비교하면서 여러 개정의견을 개진

MEMO

한 바 있습니다.<sup>1)</sup>

이번 현재결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유류분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이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2025. 12. 31.까지 입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타당한 결정으로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의견, 별개의견 및 보충의견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를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에 대하여,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도록 함으로써, 반환청구에 응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규모가 커져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증여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물가상승률이나 부동산 시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수증자는 증여 당시 재산의 가액보다 훨씬 더 많은 가액의 증여재산을 받

---

1) 김현진, “프랑스 유류분 제도의 과거, 현재와 미래”, 『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남호순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박영사, 2021; 김현진, “프랑스의 유류분 제도와 우리 민법 개정의 시사점”, 『家族法研究』 제37권 2호(2023년 7월), 1면 이하,

환하여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가가 양등한 현재 유류분 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지요. 단지 상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인 유류분권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미 해당 물건을 장기간 적법하게 보유해 온 수증자 또는 그로부터 물건을 이 전받은 제3자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반드시 기간을 제한하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동일하게 취급함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유류분제도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에 대하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이례적인 배우자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분 제도를 축소하면서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 증여나 기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보충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공익 목적 증여나 기업승계를 위한 증여는 유언자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단임에도 유류분에 의하여 그 정당한 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분명 큰 문제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의 반환을 원물로 하도록 하여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당사자 또는 제3자 사이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보충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원물반환원칙에 의하여, 만약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재산이 부동산이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부동산을 대신해 가액반환을 받는 경우 (형성권설에 따르

면), 유류분권자는 유류분권의 행사로 자신에게 귀속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부동산이나 그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세 및 취득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결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논의가 많은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의 도입, 그리고 유류분의 우회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생명보험, 유언대용신탁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공론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유류분 제도가 개정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1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HERE LAW & HEAR LAW

### < 제 2 주제 >

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 전원합의체 결정

# 상속분야의 변화와 전망



#### 발표자

최지수 변호사 (법무법인 린)

#### 토론패널

김수정 교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원종훈 본부장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박수연 기자 (법률신문)

# 鹿米 鹿舛

## CONTENTS

01. 들어가며
02. 유류분 제도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
03.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0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상속 분야에 미칠 영향
  - 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소송
  - 나. 유류분 상실 사유 제정
  - 다. 유류분 제도에 기여분 규정의 준용
  - 라.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05. 독일의 유류분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향후 개선 과제
  - 가. 독일의 입법례
  - 나.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의 도입
06. 나가며

# 01

##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2024헌가4 등). 이번 결정으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던 부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며, ①피상속인에 대한 유기, 학대 등 패륜행위를 일삼은 상속인 등에 대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민법 제1112조) 및 ②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준용하지 않아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 반환이 되던 부분(민법 제1118조)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위 결정은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하여 유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피상속인과 가족 간 연대를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 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유류분 소송의 주된 부분인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 소송이 여전히 인정되는 이상 이번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유류분 상실사유 해당 여부, 피상속인을 생전에 부양하는 등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고려 여부 등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상속 분야에 미칠 영향(①기여분과의 관계, ②유연대용신탁의 활용, ③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 도입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독일의 유류분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향후 개선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02

## 유류분 제도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

「민법」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① 유류분권리자를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로 정하고 각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규정한 제1112조, ②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및 조건부·불확정부 권리의 산정을 규정한 제1113조, ③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한 제1114조, ④ 유류분반환청구 및 그 범위와 방법을 규정한 제1115조, ⑤ 유류분반환의 순서를 규정한 제1116조, ⑥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제1117조, ⑦ 대습상속을 규정한 제1001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제1008조·대습상속분을 규정한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118조 등 모두 7개의 조항들(이하 ‘유류분 조항들’이라 한다)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에서 유류분권자로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의가 꾸준히 불거졌습니다.

아울러, 현행 민법상 유류분상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MEMO

끝으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인하여,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단절되고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유류분 제도 자체의 위헌성 논의와 더불어 학계와 실무계에서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은 단순위헌으로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② 자녀나 부모라도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패륜적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을 돌보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조항 역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 말(2025. 12. 31.)까지는 현행 민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03

##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은 단순위헌으로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② 자녀나 부모라도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패륜적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을 돌보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조항 역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년 말(2025. 12. 31.)까지는 현행 민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MEMO

# 04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상속 분야에 미칠 영향

### 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소송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제기한 유류분 소송은, 대부분 상속권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1) 다른 형제자매들을 배제한 채 특정 형제자매에게만 생전증여 내지 유증을 하거나,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상속권 없는 친인척, 대학 등 공익법인, 간병인 등 제3자에게 생전증여 내지 유증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민법」 제 1112조 제4호는 결정이 있던 2024. 4. 25. 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형제자매간 상속권은 유지되지만, 유류분청구권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졌으므로 형제자매가 민법 제1112조 4호를 근거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 소송은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sup>1)</sup>해 모두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원고 패소).

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법 조항을 전제로 재판 중인 사건은 소위 '병행 사건'으로 분류돼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근거 법 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청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은 모두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MEMO

뿐만 아니라, 비(非)형별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효력은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건 위헌 결정 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의 경우 재심을 통한 구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혼의 증가와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상속권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당초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건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1인 가구의 피상속인이 대학 등 공익법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제기하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줄어들어 소송 자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나. 유류분 상실 사유 제정- 유류분 소송에서 '패륜' 공방 예상

실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소송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부모의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소송이 훨씬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수십 년 동안 왕래도 없이 장기간 유기,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가 있는 등 자식들 간에도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평하게 상속을 받는 것이 도리어 불공평한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패륜으로 인해 유언 등의 방법으로 상속에서 배

제될 처지에 놓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지금까지는 그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었으며, 특히, 이 경우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야 할 기여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지금까지는 이른바 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로 인해 해당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을 반영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직계존속 등을 살해,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이나 유언철회를 방해한 자, 유언서 위조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피상속인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유언 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의사실현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경우만을 상속결격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까지도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위 상속결격사유보다 더 넓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기,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가 유류분 상실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상실사유가 될 정도의 '패륜'의 예시를 든 것으로서, 형법상 존속학대죄, 존속유기죄가 성립할 정도라면 유류분 상실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기간 자식을 버리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완전히 연락두절하였다가 수십 년 경과 후 그 자녀 사망 시 상속만 받으려 하는 이른바 '구하라 사건'들처럼, 부양·보호가 필요한 피상속인에 대해 의무를 완전히 방임하여 인륜을 저버린 경우도 유류분 상실사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피상속인이 보호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등 요부조자가 아니고 장기간 연락두절되었을 뿐인

## MEMO

경우까지도 패륜으로서 유류분 상실사유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류분 상실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더라도 사실관계가 그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사실관계를 다투는 패륜 논점이 유류분 소송 시 상호 치열하게 공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류분 상실사유의 입법개정시한(2025. 12. 31.)까지는 기존 유류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는 패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피고 측에서 당해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판부도 입법개정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다른 자녀에게 유증하는 등으로 패륜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더라도 패륜자녀가 유류분으로 상속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될 방법이 없었으나, 입법개정시에는 피상속인이 패륜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할 의사를 남길 경우, 그 자체로 패륜을 증명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유언법정사항 외에도 더 넓게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다.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에 기여분 규정 준용

### 1) 문제점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는 특별수익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려는 것으로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을 당해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그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에게 증여, 유증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는 결국 공동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상속하려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반면, 「민법」 제1008조의 2(기여분)는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여상속인의 몫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공평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으로부터 본래의 상속분 외에 기여한 만큼의 몫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공동상속인 간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결국, 위 두 규정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자와 기여상속인, 그 외 상속인들 간의 최종적인 공평을 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만 준용할 뿐,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가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 MEMO

이로 인하여 기여상속인이 정당한 대가로 받은 기여분 성격의 증여까지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됨으로써, 기여상속인과 비기여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이 무너지고, 기여상속인에게 보상을 하려고 하였던 피상속인의 의사가 부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 2) 유류분 반환 청구에 있어 기여분 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 전망

기여분 결정 심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심리되면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함에 반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개별 권리자와 의무자만이 참여합니다. 또한, 기여분 결정 심판은 비송절차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증거조사를 함에 반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소송절차로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입법론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가사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이를 상속재산분할절차와 병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견해(제1설)<sup>2)</sup>,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 일반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제2설)<sup>3)</sup>,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제3설)<sup>4)</sup>가 있습니다.

본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 제도에 어떤 식으로건 반영될 것으로

---

2) 윤진수,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방법", 서울대 법학 48-3, 270면; 시진국, "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司論 42 705-706면; 같은취지 임채웅, "기여분연구", 諸問題, 19, 415면, 418면.

3) 정구태, "공동상속인 간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의 가부", 인하대 법학연구 12-3, 91면 이하

4)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8, 412면.

예측됩니다. 물론 앞서 제기된 견해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하여 기여분을 반영하게 될지는 입법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향후 상속 분야 소송에서 '기여분' 관련 쟁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은 자명합니다. 즉, 위 어떤 학설에 따르더라도 향후 진행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청구권자의 유류분 인정 금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수요자 층에서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이르고자 하는 준비, 어느 정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등 해당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부양의무와 관련한 기여분의 인정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하여,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며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 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만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 금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21. 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MEMO

요컨대, 대법원의 판시내용은 기여분의 인정 여부 및 그 정도는 결국 우리의 건전한 일반 상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향후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 주장, 항변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미리 의뢰인의 기여분을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기여도를 입증할 사실관계들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3) 본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향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미칠 영향

#### 가) 기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문제점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판결)고 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결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고려할 수 없고, 설사 기여분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류

분 반환에서 기여분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적 사실관계]

갑의 상속인으로 자녀 을, 병이 있는데 갑의 유일한 재산인 4억 상당의 부동산을 을에게 생전 증여하였고, 갑이 사망하면서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만약 [기본적 사실관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병은 자신의 법정상속분(2억 원<sup>5)</sup>)의 2분의 1인 1억 원에 대하여 을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유류분 제도의 입법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추가된 사실관계]를 고려할 경우, 병이 을에게 1억 원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입법목적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 [추가된 사실관계]

병은 갑이 살아있는 동안 부양에 무관심하였고 갑의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었다. 반면에, 을은 망인을 수년간 지극 정성으로 부양하고 갑의 재산 형성에 경제적으로 기여하여 그 기여분이 4천만 원 상당으로 인정받았다.

- 5) 병은 갑이 살아있는 동안 부양에 무관심하였고 갑의 재산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었다. 반면에, 을은 망인을 수년간 지극 정성으로 부양하고 갑의 재산 형성에 경제적으로 기여하여 그 기여분이 4천만 원 상당으로 인정받았다.

#### MEMO

유류분 청구 금액에서 그 기여분 4천만 원을 공제하여 6천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을의 주장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망인의 부양에 무관심한 병을 대신하여 부모를 모시고 재산형성에 기여하였음에도, 갑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병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은 가족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 나) 본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예상되는 변화

본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유류분 청구에 있어 기여분이 어떤 방식으로건 공제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액에서 기여분이 공제될 것인지 아니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공제할 것인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물론, 본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 230083, 230090 판결)의 취지가 언급되었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서 공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된다면 [추가된 사실관계]에서 을의 기여분 4천만 원을 유류분 반환액이 아닌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4억)에서 공제하여 3억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병은 1억 원이 아닌 9천만 원<sup>6)</sup>의 유류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6) 9천만 원=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피상속인의 재산가액(3억 6천만원)]x1/2(직계비속의 상속비율)x1/2

반면, 유류분 반환액에서 기여분이 공제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된다면 [추가된 사실관계]에서 을의 기여분 4천만 원을 병의 유류분 반환액(1억 원<sup>7)</sup>)에서 공제하여 을이 병에게 지급해야 하는 유류분은 6천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어떤 방식으로 입법이 되느냐에 따라 유류분권자의 청구금액에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어떤 방식이더라도 망인의 부양에 무관심한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부모를 모시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기존보다 더 많이 반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고, 그 입증의 과정에 있어서 부부간 부양의 경우라면 대법원이 장기간 동거하면서 간호하였다는 부양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고, 성년자녀의 경우에도 2차적 부양의무<sup>8)</sup>로 보면서도 실무상 기여분 심판에 있어서는 인정여부나 인정기준에서 충분히 인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상속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부양과 관련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7) 1억=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피상속인의 재산가액(4억)]x1/2(직계비속의 상속비율)]x1/2

8)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 합의체 결정).

#### 4) 소결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법을 통하여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형태로 유류분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상속인들 간에 기여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형성이나 부양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에 대해 자신이 쌓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상속하고자 합리적인 상속 설계 방식을 찾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유언대용신탁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라.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 1) 논의의 필요성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의 수익자와 상속받을 사람을 정하는 신탁으로서,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수익자가 그 재산에서 나온 수익을 받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보다는 유연성 있게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유언 법정사항 외에도 자산 승계 방식을 보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문제를 고민하는 수요층에서 최근 많이 이

MEMO

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3조 3천억 원<sup>9)</sup> 규모로 추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에서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가 나온 후, 본건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유류분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유언대용신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하급심 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사망할 당시 수탁자의 소유였기 때문에 망인이 수익자에게 생전증여 했다고 하기 어렵고, 위탁자가 사망할 당시 위탁자의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탁자가 남긴 상속재산도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탁자가 신탁을 받을 당시에, 수익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판결 참조)

이와 반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겼더라도 위탁자는 신탁을 맡긴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향유할 권리가 있고 신탁을 맡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자가 사망한 다음 재산에서 나온 이익을 받게 되는 수익자는 이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위탁

---

9) 이지호, 「마이클 잭슨도 꽃혔다더니...부자들 멍치돈 싸들고 몰렸다」, 매일경제, 2024.04.29., 1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60006i>

자 혹은 수탁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0가합100994 판결).

성남지원의 견해와 같은 학설로는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김상훈)<sup>10)</sup>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산지원의 견해와 같이 신탁재산이 유류분의 대상이 된다는 학설로는 크게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유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기대권만 가질 뿐이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에 포함된다는 견해<sup>11)</sup>(정준섭, 노혁준)와 민법 제1114조에서 정한 증여를 본래적인 의미의 증여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무상처분을 포함하는 의미로 새겨야 하므로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전된 신탁재산도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sup>12)</sup>(최수정)가 있습니다.

### 3) 유언대용신탁의 전망

유언은 법정유언사항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데다, 까다로운 유언장 작성 기준을 충족하지

---

10) 김상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기업법연구 제29권 제4호(기업법학회, 2015. 12.), 17~19면

11) 정준섭 노혁준 편저, 신탁법의 쟁점 2권, 소화. 2015, 147-150면.

12) 최수정, “상속수단으로서의 신탁”, 민사법학 제34호, 민사법학회, 597~598면.

못한 경우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언장은 도난,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어 보관의 안전성이 담보되지도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계약만 체결하면 되므로 그 설정이 쉽고,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또한 위탁자 사후에도 수탁자가 책임지고 미리 지정해 둔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므로 집행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인 지정, 상속인 간 차등, 해외 거주자, 1인 가구, 기부 등 다양한 유형에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 하급심 판결만 있어 대법원 입장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대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과 같이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사망할 당시 수탁자의 소유였기 때문에 망인이 수익자에게 생전증여 했다고 하기 어렵고, 위탁자가 사망할 당시 위탁자의 명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탁자가 남긴 상속재산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사실상 유언대용신탁으로 유류분 방어가 가능해지게 되므로, 패륜자녀를 상속에서 배제하고 기여상속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생전에 미리 상속구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더욱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할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본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에서 기여분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포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산이 많은 피상속인일수록 합리적인 상속 설계를 위하여 기여분을 반영한 유증이나 수탁자 지정 등을 위해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MEMO

# 05

## 독일의 유류분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및 향후 개선 과제

### 가. 독일의 입법례

#### 1) 유류분에서의 생전 출연 고려

향후 민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유류분 제도에 관한 독일 민법을 살펴보면, 독일은 유류분 청구권을 결정할 때 생전 출연을 고려하기 위해 충당의무(제2315조), 조정의무(제2316조) 및 유류분보충청구권(제2325조 이하)를 두고 있습니다.<sup>13)</sup> 그 중 충당의무와 조정의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3) 김진우, "생전증여, 기여분과 유류분: 독일법으로부터의 시사점 -수원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18217판결을 중심으로-", 『法學論叢』 제28집 제2호 2021년 8월, 233면.

가. 총당 의무

제2315조(유류분에 대한 출연의 계산)

- (1) 유류분에 계산되어야 한다고 지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생전 법률행위로써 출연한 것을,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에 계산되도록 해야 한다.
- (2) 유류분을 결정함에 있어 출연의 가액은 상속재산에 추가된다. 그 가액은 출연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 (3)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면, 제2015조 제1항 규정이 준용된다.

나. 조정 의무

제2316조(조정 의무)

- (1)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고 그들 사이에 법정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출연 또는 제2057조의 a에서 정하는 유형의 급부가 조정을 위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라면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조정 의무를 고려해 분할시 법정상속분에 속하였을 바에 따라 정한다. 상속포기계약에 의해 법정 상속에서 배제되는 직계비속은 이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 (2) 유류분권자가 상속인이고 제1항에 따른 유류분이 남겨진 상속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류분권자는 공동상속인에게 남겨진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이르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도 초과분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피상속인은 제2050조 제1항에 명시된 종류의 출연을 유류분권자의 불이익으로 고려에서 제외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라 고려되는 출연이 동시에 제2315조에 따라 유류분에 충당되어야 할 경우, 그것은 이것에 가액의 절반으로만 충당된다.

#### **제2057조의a(비속의 특별급부에 대한 조정의무)**

(1) 피상속인의 가계, 직업 또는 사업에서 장기간 협력을 통해 현저한 금전급부 또는 다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정도로 기여한 비속은 상속재산의 분할 시 그와 함께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을 하게 되는 비속 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52조가 준용된다. 이는 장기간 피상속인을 돌본 비속에 대하여도 같다.

이와 같이, 제2315조 제1항은 '유류분권자는 유언자가 자신의 유류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지정이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유언자가 증여한 모든 것을 유류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제2316조 제1항 및 제2057조의(a)에서 상속재산을 유지 증가시키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간호하는 등의 특별기여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급부가 조정된 경우 유류분을 정할 때도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sup>14)</sup>

14)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2024헌가4 등.

결국, 독일은 제2315조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에게 증여, 유증하였다더라도 공동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상속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2316조는 기여상속인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모두 망인의 유언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독일 민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는 사유재산권 존중과 가족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유류분 제도 사이의 균형을 적절하게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유류분 사전포기 허용

### 독일 민법 규정

#### 제2346조(상속 포기의 효과, 제한 가능성)

- (1) 친족과 유언자의 배우자는 유언자와의 계약에 의해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한 사람은 상속개시 당시 생존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대습상속에서 제외되며, 강제분할을 받을 권리가 없다.
- (2) 포기는 의무적 공유에 대한 권리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독일 민법 제2346조는 상속의 사전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의 사전포기는

일종의 상위개념(Oberbegriff)으로서 법정상속권의 포기, 유류분권의 포기, 유언 및 상속계약상의 출연에 대한 포기를 포괄합니다. 또한 유류분권에 대하여만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sup>15)</sup>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에 대하여는 아래 항을 달리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의 도입

### 1) 논의의 필요성

유류분의 사전포기란, 피상속인과 유류분권리자 사이의 생전계약에 의하여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독일은 물론,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sup>16)</sup>

우리 민법은 유류분의 포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으나, 유류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유류분의 사전포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과적으로 유류분 제한이 완화되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유류분의 제한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규정 개정에서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15) 고상현, "독일 민법상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제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제29권 1호, 2015. 03. 335~362면.

16) 이동진, "공익기부 활성화를 통한 유류분법의 개정", 외법논집 제43권 제2호(2019.5), 41면.

## 2) 유류분 사전포기에 대한 판례

판례는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 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거나 “유류분은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 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 결정)”고 하여, 상속 개시 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sup>17)</sup>

## 3)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의 전망

우리 민법이 사전포기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대법원 역시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령화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재혼가정과 같이 전통적이지 않은 형태의 가족이 많아지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년 자녀를 둔 상태로 재혼하고자 하는 노령층의 경우, 상속 문제로 인하여 법률적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

17) 배인구, “토론문: 현행 유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家族法研究』 제37권 2호 2023년 7월 223-224면.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법률혼으로써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실혼에 대한 보호 정도를 높이는 정책도 있을 수 있으나, 그보다는 유류분 제도를 정비하여 당사자의 혼인의사를 중시하고 법률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의 사전포기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므로, 사전포기를 허용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사례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1948년부터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상속 개시 전에도 유류분의 포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정재판소는 유류분 사전 포기의 허가 기준으로 ① 유류분 권리자가 진의에 의해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② 유류분 사전 포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③ 포기에 따른 재산제공을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sup>18)</sup> 이렇게 가정재판소의 허가라는 안전장치 및 유류분 사전포기의 허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포기를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 유류분 사전포기제도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언대용신탁과 함께 활용한다면 상속 문제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 재혼의 경우 법률혼으로 제도권 안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커지고, 오히려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18) 배인규, “유류분 제도 개정안 관련”, 가정상담 6월호, 한국가정상담소 2020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19면.

유류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배제하고, 유류분 제도에 있어 기여분을 고려하고, 패륜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유류분 상실 사유 제정이 필요하다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공익목적의 증여 및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크게 부당하거나 불합리하지 않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피상속인의 의사가 점점 중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법원에서 해석상으로도 이 부분을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재차 헌법재판 및 입법개정이 있지 않는 한 일단 이 부분은 기존 유류분 제도대로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상실사유의 제정, 기여분의 반영 등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의 실현이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피상속인 사망 후에 공동상속인 간에 유류분 상실사유, 패륜해당여부의 공방, 기여분의 결정을 위한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 및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과 기여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이며, 이를 준비하

는 법률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유류분 상실사유 관련, 패륜상황이 있더라도 미리 유언을 남겨서 공동상속인 중 패륜적인 상속인에 대해 상속을 배제한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 상실여부가 문제 될 뿐, 유언 등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경우라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여전히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쟁상황에서는 반드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재혼 등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현실 반영, 피상속인의 의사실현,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예방의 측면에서 앞으로 유류분의 사전포기 및 그 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학계 및 실무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 유류분 제도의 개정을 대비한 몇 가지 첨언(添言) - 비교법적 시각에서 -

### 1. 유류분의 사전포기

유류분의 사전포기 이 제도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서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가 자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 독일의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

독일민법은 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 상속포기(Ausschlagung)와 별도로 상속과 유류분을 계약으로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상속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예컨대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류

MEMO

분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사전포기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내용통제를 하고 있고, 그 가치평가를 프랑스의 포기 철회사유나 일본법원의 유류분 포기 허가에 관해 내린 심결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나) 프랑스의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

프랑스는 상속계약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가 존재합니다. 유류분의 사전 포기는 공정증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사전포기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법률이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기가 가능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될 자가 포기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상속개시일에 포기자가 자신의 유류분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궁핍한 상태에 있을 때, ③ 포기의 수익자가 포기자에 대하여 중죄 또는 경죄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포기 행위는 피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피상속인의 행위를 조건으로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포기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고 유류분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프랑스법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 일본의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

일본 민법 제104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 포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더 자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가정법원의 심판례를 보면 유류분 포기가 유류분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그 이유가 합리성 혹은 타당성, 필요성 내지 대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허가가 불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 유산을 단독 취득시키기 위해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허가를 불허하는 이유 중 하나로 포기한 자녀에게 유류분에 상응하는 증여 등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가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유류분을 포기하는 사람이 피상속인이 될 사람의 아버지였는데, 이혼 후 그 자녀와 거의 교류가 없었던 사안에서, 유류분 포기를 상당하게 하는 합리적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심판에 대해, 그 신청은 신청인의 진의에 나온 것이라고 인정하여 항고심에서 신청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전포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예컨대 피상속인이 될 자가 혼외자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유류분 포기를 요청해 혼외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을 받고 유류분을 포기했는데, 이후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착오를 이유로 법원 허가의 취소 청구를 한 사안도 있어 착오 취소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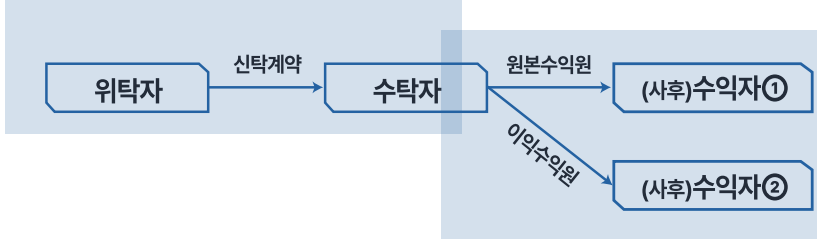
## 유언장을 대신할 유언대용신탁의 활용과 법률적 제도적 개선방안

### 1.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위탁자와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고 재산을 보관, 관리, 처분, 운용하다가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신탁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관리 및 분배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살아있을 때 돈을 맡기기 때문에 생전신탁으로도 불리며,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26일에 신탁법(신탁법 59조)이 개정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다섯 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EMO

※ 생전 위탁자의 자산관리 가능(운영, 처분, 관리 등의 지정)



※ 사후 유연설계 가능(집행시기, 조건, 연속수익자 지정 등)

## 2. 신탁설계를 통한 자산관리와 다양한 방식의 유언의 집행

유언대용신탁의 생전수익자는 일반적으로 위탁자 본인이므로 생전에는 자익신탁(위탁자 본인의 자산관리 기능)을 하고, 사후에는 특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상속인 등에 대한 유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다양한 특약으로 사후 특정상속인에 대한 수익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본인과 사후 특정상속인의 건강 또는 장애가 걱정되는 경우 성년후견인(임의후견)을 지정하되 재산관리와 신상관리를 분리하여, 후견인에게는 신상관리를 맡기고 신탁으로 재산관리를 맡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언대용신탁과 성년후견인의 만남은 친족후견인 또는 전문후견인의 횡령과 배임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수익자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MEMO

### [유연대용신탁의 활용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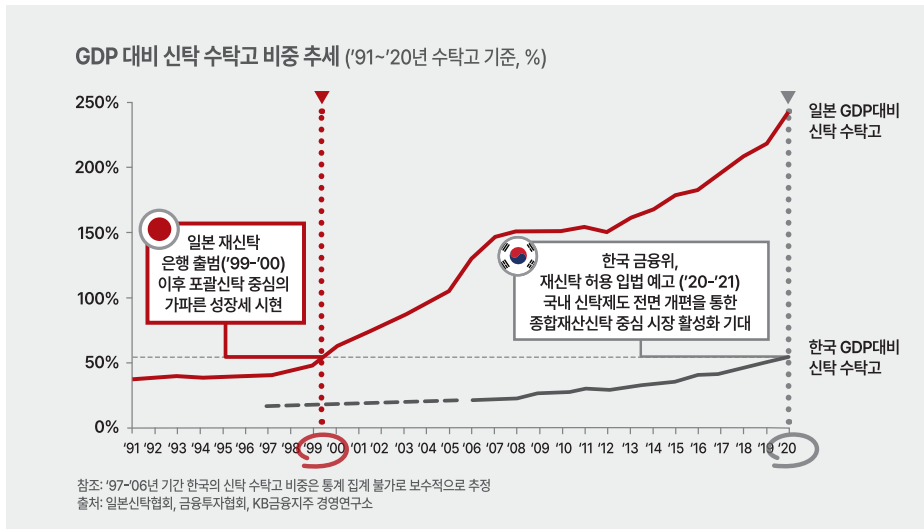
- ◆ 연속수익자신탁을 활용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재산의 분할 기능
- ◆ 결혼, 취업, 진학 등의 성취조건부 수익권 설계
- ◆ 상속인을 위한 가족 중심의 장학지원 시스템 구축
- ◆ 장애인자녀와 미성년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 ◆ 원본의 수익과 이익의 수익을 분리한 수익자지정: 사후 원천재산 보호기능
- ◆ 기업승계신탁을 통해서 유류분 침해 없이 기업승계지원(의결권과 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의 분리 활용)
- ◆ 북한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기능
- ◆ 유명 작곡가, 저술가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리
- ◆ 신탁수익권의 집행을 통한 손쉬운 금융상품에 대한 명의변경

### 3. 유연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선과제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업역이 구분되어 있는 한국에서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탁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수익극대화에 중심을 둔 Asset Management는 신탁을 통해야만 모든 재산이 수탁자의 관리자산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탁이 활성화되어야 진정한 Wealth Management가 가능해집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MEMO

산 등의 전통적인 자산을 포함해서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권까지도 관리자산의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법률, 세무, 의료 등의 전문분야를 위탁할 신탁전문회사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신탁과 금전에 대한 합동운용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22년 10월13일 정부는 신탁업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신탁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다만 아직 입법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유연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예시]

- ◆ 기업승계신탁을 활용하는 경우 상증법 제18조의2의 기업상속공제 허용
- ◆ 부동산의 경우 유언내용에 대한 비밀보호기능 추가(예: 신탁원부열람 불가)
- ◆ 부동산신탁 중 주택신탁 관련 제도정비의 필요성(예: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신탁불가)
- ◆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의 제한 폐지(신탁업혁신방안 반영, 22.10.13)
- ◆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의 제한 폐지 또는 포괄주의 변경(신탁업혁신방안 반영, 22.10.13)
- ◆ 수익권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 ◆ 원본수익권과 이익수익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의 모호성

##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이 상속인들에게 미칠 영향

### I. 서론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JTBC 드라마 '재벌 집 막내아들'을 기억하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극 중 '순양그룹'의 회장인 진양철(이성민 분) 회장이 주인공인 손자 진도준(송중기 분)에게 단 한 푼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자, 주변 사람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유류분이 일상 대화 속 대사로 등장했던 것이 놀라웠다는 법조인들의 반응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유류분 사건은 재벌가의 이야기라고 여겨졌지만, 더 이상 재벌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MEMO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민사본안(1심) 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3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7건 △2021년 1702건 △2022년 1872건 △2023년 2035건으로 약 10년간 약 245%(3.4배)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망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규정(제1112조 제4호)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은 입법부작위(1112조 1~3호)와 △기여분 조항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제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장기간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기여를 유류분에서 인정하고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은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sup>1)</sup>

저는 오늘 발표자님의 말씀 취지에 동의하면서 취재 과정에서 느낀 것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1) 법률신문 제5173호(2024년 4월 29일 자) 1·3면 기사 「'유류분' 위헌성 판단에 상속다툼 더 치열할 듯」, 「新유류분 조항 개정 예고에 상속인들 촉각」 참조

## II.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반응 및 전망

취재 과정에서 만난 법조인들은 모두 상속재산 다툼이 더 첨예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상속 분쟁 과정에서 패륜이나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 기여도를 주장하는 다툼이 많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전에는 없던 '패륜'을 증명하는 과정이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자식의 경우,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상속인들과 '패륜'을 했느냐를 쟁점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사실심 재판부가 내리는 판단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헌재가 입법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한 만큼, 개선 입법 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패륜' 주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만큼 재판부가 종전과 동일하게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염두에 둔 당사자와 관계자들은 이러한 재판의 흐름을 분석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故 구하라' 씨 사례를 제외하면 어떤 것을 '패륜'으로 볼지 재정의하는 단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와 재계까지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반말을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고 구박을 하되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제적 독립을 이룬 뒤 금전적으로 부양한 사람을 '패륜'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부모에게 상냥하고 친절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부모에

MEMO

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걱정시키며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친 사람을 ‘패륜’으로 볼 것인지 그 정의에 대해 일반 국민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패륜의 정의와 법문의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계에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재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기여도’ 증명입니다. 현재는 부모를 오래 간병 또는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을 다른 상속인들과 차이를 두지 않는 것과 관련해 “(다른 유족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으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반환하게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상 유류분에 기여분이 준용되지 않아,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처럼 망인을 부양한 자식 등이 기여 등에 대한 보답으로 재산을 증여 받았더라도 증여받았던 재산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현재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여분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여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 정의를 어떻게 봐야 할지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픈 부모님을 어느 정도로 간병해야 기여를 인정할 것인지, 또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때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사 주식 가치를 어느 정도 상승시켜야 ‘기여’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재정의에 대한 각계의 공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부모의 부동산을 매일 쓰고 닦고 관리한 자가 부동산 상승의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것인지 내지는 부모의 회사에서 근무를 통해 실적을 상승시켜 주가 상승에 대한 것이 기여가 크다고 할 것인지 혹은 부모가 아플 때 집안에서 부양하며 부모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자가 기여가 크다고 할 것인지를 천편일률적인 법문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양했거나 상속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보답을 주장해 인정 받는다면, 망인에게 증여 받았던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법원은 이러한 기여를 특별수익 인정에 반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기여'를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특별수익을 인정하는 데 반영하는 것에 그쳤던 만큼 앞으로 법원 판단이 '기여'에 대한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정 정도가 어떻게 판단될지에 따라 반환할 유류분의 가액에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리 의뢰인의 기여분을 장기간에 걸쳐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기여도를 입증할 사실관계들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발표자님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장은 기업 오너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BYC 일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sup>2)</sup> 등 상속 분쟁 중인 기업 중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한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과 직접 관련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판단 부분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된다면 향후 상속 및 경영권 분쟁 등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패륜)나 기여가 있는 상속인(부양 가족)에 대한 규정이 새로 생기면, 관련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 오너 가족 등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성장에 기여한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상속 재산 중

---

2) 한석범 BYC 회장의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모 씨와 그의 다른 자녀들은 한 회장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3709)

기업 지분이 많이 포함된 경우엔 후계자들 간 경영권 다툼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 개정 시한 전후로 상속인들 간 소송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나 유류분 상실 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법이 이뤄진 뒤 소송을 내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상속 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성장성이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 Ⅲ. 결론

아직 국회의 입법이 남아있는 만큼, 개선 입법 사항을 적용하는 시점이 부칙에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개선 입법 후 발생한 상속부터 적용할지, 현재 결정 후 제기된 상속부터 적용할지에 따라 미칠 파장이 다를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이번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사건뿐 아니라 분쟁이 염려되는 사건에서 다 주목해야 하는 만큼 주목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자님의 말씀처럼 앞으로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기여분에 대한 컨설팅이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유류분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직 소송은 없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MEMO

아직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기도 전인 만큼 모든 의견이 유보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이 국민 경제, 나아가 국민들의 일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개선 입법은 제22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 결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선 입법 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새로운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마련된 ‘헌재 유류분 결정, 상속과 기업승계 어떻게 달라지나’ 토론회를 토대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는?  
(Here Law & Hear Law)**



“...인류공동생활의 기반이 될  
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률가는  
국민 대중속에 뛰어 들어가야...”

1950년 12월 1일자 법률신문 창간호에 실린  
법률신문 창간사의 일부입니다.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는  
법이, 법의 정신이 우리 일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가는  
행사입니다.

매달 한차례 우리 삶에 밀접한 이슈를 선택해  
건전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문의**

법률신문 사입국 070-4395-1515

[www.lawtimes.co.kr](http://www.lawtimes.co.kr)